

##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 - 냉장식품의 매장 직반입 등 운영 관련 절차 개선 -

관세청은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면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과제 추진에 따라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개정 사유와 주요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I. 개정 이유

- 냉장식품의 매장 직반입 등 적극행정위원회 의결 사항 반영
- 보세판매장 물류 환경 개선을 통한 업무 효율성 및 물류 흐름 원활화 제고

### II. 주요 내용

#### 1. 적극행정위원회 의결 사항 반영(제6조, 제23조)

- 냉장 보관이 필요한 내국물품에 대해 매장 직반입을 허용하여 물류비용 절감 지원

현 행	개 정
<b>제6조(판매용물품의 반입신고 및 반입검사신청)</b> ① 운영인은 보세판매장 판매용물품을 보관창고(통합물류 창고 또는 지정장치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반입한 후 매장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u>운영인이 사전에 세관장에게 반입전 판매를 신청한 물품은 판매(주문 또는 결제를 포함한다) 이후에 보세판매장 보관창고에 반입할 수 있다.</u>  <신 설>	<b>제6조(판매용물품의 반입신고 및 반입검사신청)</b> ① ----- ----- ----- 다만, <b>냉장 보관이 필요한 내국물품은 세관장이 재고관리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장으로 바로 반입할 수 있으며, 운영인은 반입 즉시 관할세관장에게 반입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b>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인이 사전에 세관장에게 반입전 판매를 신청한 물품은 판매(주문 또는 결제를 포함한다) 이후에 보세판매장 보관창고에 반입하여 관할세관장에게 반입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 보세판매장 운영인에 대한 중복 점검(보고)사항을 개선하여 운영인 부담 경감

현 행	개 정
<b>제23조(세관장의 업무감독)</b> <신 설>	<b>제23조(세관장의 업무감독)</b> ⑧ 제4항에 따라 재고조사를 받는 보세판매장에 대해서는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20조제1항제3, 4호에 대한 보고 및 제22조제4항제4, 5, 6호에 대한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 2. 보세판매장 물류 흐름 개선을 위한 전자적 처리 방법 도입(제14조, 제18조)

- 보세운송 물품 인수인계 시 전자적 방법(QR코드 등) 이용 허용

현 행	개 정
<p><b>제14조(판매물품의 인도)</b></p> <p>⑤ 인도자는 인도장에 보세운송 물품이 도착된 때에 제 12조제4항에 따라 잠금과 봉인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한 후 잠금을 개봉하고 보세운송 책임자와 인도자가 판매물품 인수인계서(별지 제12호서식의 반송 및 간이 보세운송 신고서를 판매물품 인수인계서로 고쳐 사용)를 작성하여 인수인계를 하여야 하며, 세관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보세운송 도착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p>	<p><b>제14조(판매물품의 인도)</b></p> <p>⑤ ----- ----- ----- ----- ----- ----- --- <b>인수인계(전자문서에 의한 인수인계를 포함한다)</b>를 하여야 하며, ----- -----.</p>

- 인도자의 미인도 물품목록 제출 의무를 전산 확인 등록 방식으로 변경

현 행	개 정
<p><b>제18조(미인도 물품의 처리)</b></p> <p>① 인도자는 판매물품이 인도장에 반입된 후 5일 이상이 경과하여도 구매자에게 인도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u>미인도 물품목록을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보고하고</u>, 인도자의 입회하에 현품을 행낭 또는 각종 운반용 박스 등에 넣은 후 보세사가 잠금 또는 봉인을 하여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해당 물품을 판매한 운영인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취소 등 구매자의 미인수 의사가 명확한 미인도 물품에 대하여는 인도장 반입 후 5일 경과 전이라도 운영인에게 인계할 수 있다.</p>	<p><b>제18조(미인도 물품의 처리)</b></p> <p>① ----- ----- <b>재고관리 시스템에 미인도 물품 확인 등록을 하고</b>, ----- ----- ----- ----- ----- -----.</p>

## 3. 보세판매장 운영 관련 절차 개선(제9조, 제19조, 제30조)

- 출입국장 면세점의 전자상거래 판매 허용에 따른 판매실적 신고 방법 신설

현 행	개 정
<p><b>제9조(판매장 진열 및 판매)</b></p> <p>① 운영인이 물품을 판매한 때에는 구매자 인적사항 및 판매사항을 전산관리하고, 세관에 전자문서로 실시간 전송(시내면세점에서 판매된 물품을 보세운송 하는 경우 보세운송 신고 시)하여야 한다.</p>	<p><b>제9조(판매장 진열 및 판매)</b></p> <p>① ----- -----,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때에 세관에 전자문서로 실시간 전송하여야 한다.</p> <p>1. 시내면세점에서 판매된 물품을 보세운송하는 경우는 보세운송 신고한 때</p> <p>2. 입국장면세점과 출국장면세점에서 제11조에 따른 전자상거래에 의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판매물품을 구매자에게 인도한 때</p> <p>3. 그 외의 경우에는 물품을 판매한 때</p>

- 환불 처리한 판매 물품에 대해 직반환(반입) 장소를 보세판매장 보관창고에서 통합물류창고로 확대하여 운영인의 물류비용 절감 지원

현 행	개 정
<p>제19조(반품, 분실물 등의 처리)</p> <p>④ 운영인이 판매물품을 교환하여 준 경우에는 그 반품된 물품은 보세판매장 또는 통합물류창고에 재반입 절차를 취하고, 교환하여 주는 물품은 판매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가격상의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병기하여야 하며, 판매물품을 환불하여 준 경우에는 그 반품된 물품은 보세판매장에 재반입 절차를 취하며 반환된 현금은 판매최소로 판매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p>	<p>제19조(반품, 분실물 등의 처리)</p> <p>④ ----- ----- ----- ----- ----- 보세판매장 또는 통합물류창고에 재반입 ----- ----- -----.</p>

- 서류 출력이 필요한 필증의 보관 의무를 삭제하고, 서류를 출력 없이 자료보관매체에 보관할 수 있게 하여 운영인 서류 보관 부담 경감

현 행	개 정
<p>제30조(서류의 보관)</p> <p>① 운영인은 물품반입검사신청필증(구비서류 포함), 보세운송신고필증 및 교환권 등 판매물품 반출입과 판매에 관한 자료를 영 제3조에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영에 규정되지 않은 자료는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p>	<p>제30조(서류의 보관)</p> <p>① ----- 물품반입검사신청·보세운송신고에 관한 자료 및 교환권 등 판매물품 반출입과 판매에 관한 자료 ----- -----.</p>

### III. 시행일자

2024년 2월

####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_개정\_신구조문대비표

[붙임2]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_개정\_입안계획서

#### I Contact



정현욱 관세사

T 070-4353-1513

E hujung@esein.co.kr



이지은 관세사

T 02-6011-3092

E jelee1@esein.co.kr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

Copyright 2024 SEIN Customs & Auditing corp. All rights reserved.